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 세무 대리인에 대한 규정 발표(재경부, 2014년 4월 12일)

캄보디아 재경부는 2014년 4월 12일 세무 대리인에 대한 규정(Prakas on the Tax Service Ag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 대행 등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 신청비를 납부하고(자연인의 경우는 1,000,000리엘, 법인의 경우는 2,000,000리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라이선스 없이 세무 신고 대행 업무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0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라이선스가 없는 자에게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도 5,000,000리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무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세무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한 후 위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세무 신고와 관련한 사기로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부적격자에 의한 세무 신고 대행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출용 쌀 판매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시행(재경부, 2014년 3월 19일)

재경부에 의해 제정된 수출용 쌀 판매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Prakas on the implementation for the contractors who supply rice for rice exporting)이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쌀 수출 라이선스를 가진 자에게 외국으로의 수출 목적으로 쌀을 판매한 자에게는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General Tax Department)에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1년 마다 심사를 거쳐 면제 혜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와 같은 규정의 시행으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쌀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